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88

발의연월일: 2021. 3. 10.

발 의 자:김용판・이종성・이주환

유경준 · 김영식 · 태영호

박대수 · 성일종 · 정희용

서일준 • 추경호 • 권영세

정찬민 · 권성동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.

현행법에는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으나, 대상자 범위가 좁고 주식 등 다른 자산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음. 또한,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그 특성 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그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었음.

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

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.

또한,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,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하여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26조, 제26조의2 및 제28조 등).

법률 제 호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직원"을 "직원(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"으로, "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"를 "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"로 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6조의2(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신고)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범위, 신고의 절차・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제1항 중 "2년"을 "3년"으로, "1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3천만원"을 "1억원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거래에 관

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한다.

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부동산의 취득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주택, 토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6조(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제26조(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)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 금지) ① -----직원 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 (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 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 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)-----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 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다. 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 하게-----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26조의2(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신고)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 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범위, 신고의 절 제28조(벌칙) ① 제22조를 위반한 지자는 <u>2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<u>1</u> <u>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3천만원</u>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9조(과태료) <신 설>

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<u>차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</u>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28조(벌칙) ①
<u>3년</u> <u>3</u>
천만원
②
<u>1억원</u>
,
<u>.</u>
③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
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거래
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
나 신고를 거부한 자는 1년 이
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
의 벌금에 처한다.
제29조(과태료) ① 제26조의2제1
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
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
료를 부과한다.
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